

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- 79호

##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

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(8·9급)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7일

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 시험일시

#### ○ 2024. 6. 22.(토) 10:00 ~ 11:40 (100분)

※ 장애편의제공(시간연장) 대상자 : 1.5배 10:00~12:30 (150분) / 1.7배 10:00~12:50 (170분)

※ **시험장 출입은 08:00부터 가능하며 09:10까지 입실**

### 2 시험장소

#### ○ [붙임1] ‘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’ 참조

※ **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소에서만 응시 가능 (이외의 장소에서는 시험응시 불가)**

○ 지역별로 학교명이 유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,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 응시자 유의사항

#### [일반사항]

○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**09:1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 (시험 당일 08:00부터 입실 가능)

-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, 신분증,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, 수정테이프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  - 응시표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표 출력
  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여권(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여권 : 여권정보증명서 지참)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
    - ※ 모바일신분증,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   - ※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[주민등록초본, 법원의 개명허가서(결정문 등)]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  -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(수정액·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
    - ※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행위에 해당됨
-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시험 전일 및 시험 당일 08:00 이전 시험실 출입 불가)
-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. (차량탑승 응시자는 시험장 인근에서 하차 후 도보 출입)
-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문제책이 시험실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  
(09:50 시험장 출입문 일괄 통제)
-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종료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

-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 소리, 습관적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(시설 전체)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, 태블릿PC,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(안경 등), 스마트시계, 무선호출기, MP3, 블루투스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퇴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식수 및 화장지는 시험장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,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.
- **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**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또는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**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  - ※ 계산·통신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(스마트 시계 등), 소리로 인해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 불가
- **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할 경우에는 성명, 책형, 생년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먼저 기재한 이후에 답안을 옮겨 적으시기 바라며, 이전 답안지는 시험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**
-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,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

-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출제한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,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 (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)

직급(직렬)	직 류	경기도 자체출제 과목	비 고	
9급	농 업	축 산	가축사양, 가축육종 (2과목)	비공개
	녹 지	조 경	조경학,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(2과목)	
	해양수산	일반수산	수산일반, 수산경영 (2과목)	
	시 설	도시계획	도시계획개론, 토지이용계획 (2과목)	
	시 설	디 자 인	디자인기획론, 공공디자인행정론 (2과목)	

※ 출제된 비공개 문제책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(안경 등)로 촬영하는 행위 또는 문제책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
- **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**에 대한 필기시험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〈정답 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〉

1. 정답공개 일시 : 정답 가안 6. 22. (토) 13:00 / 최종 정답 7. 1. (월) 18:00
2. 정답공개 방법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 → [시험문제/정답 → 문제/정답 안내]
3. 이의제기 기간 : 6. 22. (토) 18:00 ~ 6. 25. (화) 18:00
4. 이의제기 방법
  -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 → [시험문제/정답 → 정답 이의제기]
  - 구체적인 이의제기 방법은 정답 가안 공개 시 공지 예정

**[답안지 기재 및 표기]**

-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.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“컴퓨터용 흑색 사인펜”을 사용하여 반드시 <보기>의 올바른 표기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

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란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은 불이익(특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잘못된 표기 : 


- 빨간색 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반드시 기재(표기)하여야 합니다.

**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음**

-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, 문제책 누락, 인쇄 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해야 하며, **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행위로 처리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**

**※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,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함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**

**※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**

-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  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## [부정행위 등 금지]

-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1항)
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
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2항)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(수정테이프 등)을 빌리는 행위
 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-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  -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  -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르지 않아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▶ **특히 시험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, 당해시험을 무효처리**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**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에 해당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**

- ▶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,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4 필기시험 가산점 등록 안내

- ‘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산점’ 및 ‘자격증 가산점’ 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 **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**에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**가산점 정보를 등록**하여야 합니다.

- 가산점 등록기간: **2024. 6. 22.(토) 09:00 ~ 6. 24.(월) 18:00**, 기간 중 상시 등록 가능
- 가산점 등록방법:
  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 →마이페이지→가산자격증 등록

-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	·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·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·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설명 참고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, 의상자 가족)	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	
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 (직렬·직류별)	과목별 만점의 3~5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

- **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**
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5% 또는 10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(기관별·직급별·직류별)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에서 확인

○ 의사상자 등 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3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(기관별·직급별·직류별 등)로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(☎ 044-202-3255)에서 확인

-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.

○ 직렬(류)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- 아래의 직렬(류)에 응시한 응시자가 직렬(류)별 적용되는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행정(일반행정)	세무(지방세)	사회복지(사회복지)
변호사, 변리사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	변호사

-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계 급	가 산 비 율	
	5%	3%
8·9급	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	기능사

※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[붙임 3] ‘직렬(류)별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 안내’ 참조

-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점,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.



○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**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**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 가산점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

시험명	등록기간(기간 중 상시 등록가능)
제1회 (8·9급) 공개경쟁임용시험	2024. 6. 22.(토) 09:00 ~ 6. 24.(월) 18:00

- 가산점 등록대상 및 등록사항

등록대상	등록사항
취업지원대상자	취업지원대상자 여부, 보훈번호, 가점비율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, 의상자 가족)	의사상자 등 여부, 증서번호, 가점비율 ※ 가점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시 의사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
자격증 소지자	자격증 종류, 자격번호

- ※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, 의상자 가족)은 동일하지 않으니, 응시자는 사전에 본인의 등록대상 가산점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※ 가산점의 허위 기재, 잘못된 입력, 입력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가산점 등록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## 5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신청

- 성적 공개내용 :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원점수\*  
\* 원점수: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은 개인별 취득 점수
- 공개기간 : 2024. 7. 17.(수) 09:00 ~ 7. 18.(목) 18:00
- 확인방법 : ①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 접속  
② 로그인 ③ 성적조회
- 이의신청 기간 : 2024. 7. 17.(수) 09:00 ~ 7. 18.(목) 18:00
- 이의신청 방법 :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

- (전화 신청)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(☎ 031-8008-2214, 4021, 4040)  
※ 기간 중 근무시간 내 신청 [09:00 ~ 18:00, 점심시간(12:00 ~ 13:00)제외]
- (이메일 신청) ggexam@korea.kr로 신청  
※ (메일 제목) 응시번호 8자리, 직류, 성명 / (본문) 이의제기 내용 작성
-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판독결과를 다시 확인·검증하여 재검증 결과를 공개
-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,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별 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  
※ 이의신청 기간 중 답안지 열람을 희망할 경우, 사전에 전화신청을 한 후 본인에 한하여 열람 가능  
(☎ 031-8008-2214, 4021, 4040)

○ 이의신청 재검증 결과 공개 : 2024. 7. 22.(월)

〈시험성적 산출 및 이의제기 유의사항〉

- ▶ 개인별 성적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름
- ▶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(정답 표기 불인정)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,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음
  - 와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
  - 볼펜·연필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하거나 중복표기되어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

## 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-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4. 7. 29.(월) 전·후, 경기도 홈페이지(<https://www.gg.go.kr>)에 게시합니다.